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5. 김명섭의원 외 3인
나. 회부일자 : 2008. 10. 15.
다. 상정일자 : 2008. 10. 21.(제1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김명섭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개정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부서의 명칭, 직위에 맞추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
- 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일치하지 않아 상임위원회 공백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일치시켜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 제2항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가.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으로

나. 행정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으로

-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가. 미래경영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에 속하는 사항에서

→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로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제2항 중,

→ “간사” 를 “부위원장” 으로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제1항 중

→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를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로

○ 제6조(상임위원장)제2항 중, 제11조(간사)제1항, 제2항, 제3항 중

→ “간사” 를 “부위원장” 으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학)

○ 법률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법률적 위배사항이 없음.

○ 행정적인 검토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상 상임위 소관 사무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은 없으며,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상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있어 자치행 위원회 소관 업무상 전략사업팀, 투자유치팀 소관을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를 추가하였으나 업무 연관상 상수도과 하수도 관리 이원화의 문제점은 있으나 환경과의 행정복지본부 이관으로 하수업무와 환경업무가 성격상 일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상 부위원장은 「위원장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총칭되어 지방자치법상 위배사항은 아니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 위원회 조례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원으로부터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은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새로 선출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의장의 임기와 선거가 지연될 경우 상임위 공백 상태가 예견되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